

업라이즈투자자문 「신용정보 활용체제」 개정안 신. 구조문 대비표

변경 사항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</p> <p>가. 본인신용정보제공·열람청구권</p> <p>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</p> <p>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</p> <p>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</p> <p>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·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	<p>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</p> <p>가. 본인신용정보제공·열람청구권</p> <p>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</p> <p>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</p> <p>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</p> <p>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·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	<p>바.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추가</p> <p>사.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추가</p>

마. 연락중지 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

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동의를 철회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

할 수 있습니다.

마. 연락중지 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

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동의를 철회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

할 수 있습니다.

바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

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, 신용정보

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

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사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

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